



제439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마련 〉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219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혁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7. 29.
3. 회 부 일 : 2026.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생 우울·불안·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업 부담,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대학의 장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의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교육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등) ① 대학의 장은 학생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상태(이하 “마음건강”이라 한다)를 안정적으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생 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마음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제22조에 따른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배치, 연계 체계 구축 및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최근 대학생들은 학업 부담, 취업 불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 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특히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치료 또는 연계가 필요한 위기학생이 상당수 확인되는 등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24년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표본(대학생 542명 대상 온라인 설문)의 43.5%가 우울위험, 16.4%가 자살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리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개입(상담 및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없다’는 응답보다 최대 2.7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¹⁾

□ 그러나 대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체계는 심리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의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등 상담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대학의 학생상담센터는 법률상 설치 의무가 없고 운영 방식 또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이에 따라 상담센터의 운영 수준과 지원 규모가 대학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상

1)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2024년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2025.9.17.

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 「2025 전국대학교 학생상담 관련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 학생상담기관 중 상담원이 1명만 배치된 기관은 33.1%에 달하며,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도 전체의 43.8%였음. 또한 상담 수요 증가로 상담 대기자가 발생하여 실제 상담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²⁾

이러한 여건은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비해 전문인력 확보가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상담 및 심리적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³⁾

- 이에 따라 학생의 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계의 마련과 교육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특히 현행 대학의 상담 지원은 주로 상담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의 경우 상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워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2) 응답기준 209개교 중 205개교에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3)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2025 전국대학교 학생상담 기관 실태조사」, 2026. 04. 15.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대학 내 상담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지원체계에 포함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적시에 연계·지원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학의 마음건강 지원 범위와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학생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마음건강’으로 정의하고,⁴⁾ 학생의 마음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에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의 교육활동을 넘어 학생의 사생활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정신건강까지 지원·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성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학이 학생의 사적 생활 영역에 어느 범위까지 개입하여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현재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217285,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마음건강을 ‘학생이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의안번호 : 2205850,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학생이 성장기 발달 특성에 맞게 사회적·정서적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도 학생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중심으로 마음건강의 개념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마음건강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할 경우 대학의 학생상담센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대인관계·진로·정서 등에 관한 상담 및 지원까지 제외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마음건강의 범위를 단순히 ‘교과·비교과 활동’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과 관련된 심리적·정서적 건강’ 등으로 규정하여 대학이 학생의 대학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조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⁵⁾

개정안은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현행법 제22조에 따른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마음건강 문제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학생에

5) 안 제4항은 학점 이수 등 학업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업 관련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인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안 제3항의 ‘마음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보다 범위가 제한적임.

6)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게 대면수업뿐만 아니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 중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2조는 학교 수업의 방법으로 주간·야간·계절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교육적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제22조에 따른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할 수 있음.

특히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건강상태와 치료기간 등에 따라 원격수업, 출석 및 학습기간 조정, 과제·평가 방법의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기본적인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대학별 여건이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마음건강 문제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수업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업 참여 지원 조치는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에서는 지원의 기본적인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교육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에 ‘관련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은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 공공성이 높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명시할 경우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된 민간 영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관련 사업자’의 범위와 국가 재정지원의 대상·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과 목적을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재정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19조의3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인권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⁷⁾⁸⁾

문 의 처
02)6788-5188

- 7)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8)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2021. 3. 23.)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대학 인권센터의 지원을 위하여 동 법 제19조의3제3항을 근거로 2022년 5억원, 2023년 8억원의 재원으로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